

법원공보

2024. 09. 01
S U N D A Y
VOL.1695



법원행정처

목차

contents

내규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 1423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 재정보증 내규 ————— 1426

예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1428

신법령 목록

————— 1439

내규

●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71호 2024. 8. 19. 결재)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히, 직근 고등법원장은 동일권역 내 새로운 법원이 개원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본문의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권역에서의 연고 유무, 직급, 재직경력 등 제1항의 우선배정순위를 고려하여 법원 간 균형 있는 관사 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5의 부산, 수원고등법원의 각 소속 법원란에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을 추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6조【관사의 사용허가】

- ① (생 략)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5에 해당하는 소속법원 및 소속지원의 관사에 대한 사용허가는 직근 고등법원장이 하 되, 해당 소속법원장 및 소속지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③ ~ ⑤ (생 략)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개 정 안

제6조【관사의 사용허가】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특히, 직근 고등법원장은 동일권역 내 새로운 법원이 개원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본문의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권역에서의 연고 유무, 직급, 재직경력 등 제1항의 우선배정순위를 고려하여 법원 간 균형 있는 관사 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현행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수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개정안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u>부산회생법원</u>	동부지원 서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수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u>수원회생법원</u>	

◎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 재정보증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31호 2024. 8. 26.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상업등기법」 제1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
2. 「상업등기법」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
3.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후견등기관
4.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과 등기기록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 등)

제3조(재정보증)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법원행정처장을 피보험인으로,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5억원 이하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억원 이하

제5조(보험료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 또는 후견등기관 등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등기관 또는 후견등기관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법원행정처장이 등기관 및 후견등기관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예규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03호 2024. 8. 6.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변제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변제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반대급부 이행조건 또는 지급제한사유*가 있거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인 경우 등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말하며,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변제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6.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변제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00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 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1천만 원 초과 시: 공탁통지서 원본 추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반대급부 증명서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 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개별 구비서류	미성년 자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증명서면 ※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재외국 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주소공증서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 주소 공증서면)	
	외국인	본인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 인의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협약 미 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은 불요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이외의 은행은 이제 불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2]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집행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집행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집행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경우는 관련사건의 부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를 경유하여 증명서를 받아 이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집행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매계(지급위탁계) 또는 기타집행계(채권배당계)** 등 집행법원에서 “**증명서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 등에서 수령)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 등에서 수령)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경매계 또는 채권배당계 등에서 수령)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 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와 공탁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 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경우, 위 증명서를 제외한 첨부서면과 ①공탁통지서(5천 만 원 초과 시) ②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을 제출하여 출급청구 가 능. 단, 가압류된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 전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위 증명 서를 제외한 공통서류 및 공탁통지서(5천만 원 초과 시) 제출하여 출급청구 가능			
증명서 수령을 위한 첨부서면	※ 정확한 내용은 경매계, 채권배당계 등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차인	명도확인서 1부(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압류권자	추심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	
		전부권자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확정증명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문 및 가압류신청서 사본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집행력 있는 중국판결 등 - 본안 판결정본 1부,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 명 1부(판결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소장사본 추가 제출)		
	전세권자	명도확인서 1부(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권설정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	근저당 등기필정보, 근저당설정 원인증서(차용증 등) 원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원본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정본 및 송달 및 확정증명 단, 소취하된 경우(소취하증명, 소취하간주증명)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 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 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3]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재판상 보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로 한 위 재판상 담보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재판상 담보공탁 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는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①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소송완결 후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재판상 담보공탁 회수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금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종합민원실이나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 **“담보취소결정正本과 확정증명”**을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00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正本 및 확정증명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서 원본 추가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正本 및 확정증명 5천만 원 초과 시: 공탁서 원본 추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보취소결정正本 및 확정증명 1천만 원 초과 시: 공탁서 원본 추가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 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개별 구비서류	미성년 자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초본 등 상속증명서면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재외국 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주소공증서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 주소 공증서면)
외국인		본인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관할 공탁소와 거리가 먼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 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 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은 불요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4]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개인회생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피공탁자로 한 위 개인회생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개인회생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개인회생공탁 출급청구절차 안내문

※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관할법원(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 회생위원회에 “증명서” 수령**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준비 서류	개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가 변동된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은 00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로 기재되어야 함	
		대리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수령)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천만 원 초과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불가)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수령)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	신분증 1천만 원 초과 시: 대표자(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표자(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개인회생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수령)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성 인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첨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회생부서와 공탁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므 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비 서류	미성년 자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상속인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증명서면 협의분할시 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재외국 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주소공증서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일인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 주소 공증서면)	
	외국인	본인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동일(위임장은 제외)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는 위임장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주소증명서면(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 번역문과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협약 미가입국은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5]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제9조제4항(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안내)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공탁소			
공탁사건번호	년 금 제 호	공 탁 종 류	공탁
금 액 (잔액)※	원	공 탁 일 자	년 월 일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관 련 사 건			
지급제한사건			

※ 공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본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잔액)”은 일부 권리자가 출급·회수 후 남은 금액(귀하 또는 다른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를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 한 위 공탁사건이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출급·회수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건의 (가)압류 발령법원 또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함께 보내드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은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5. 본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공탁법] 제9조제4항, [공탁규칙] 제60조의2제5항에 의하여 귀하의 현 주소지를 조회하여 발송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절차 안내문

※자세한 출급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5천만 원 초과 시)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1. 공탁서 원본(5천만 원 초과 시) 2.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일반집행공탁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채권배당계에서 수령)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1. 증명서(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해방공탁(공탁자의 회수청구시)	기타 공통 사항
1. 공탁서 원본(5천만 원 초과 시)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 취하(해제)접수증명, 집행해제증명은 불가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1천만 원 초과 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6. 신분증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사찰 등) 또는 관공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지급청구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추가서류)

- 개인의 대리인: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단, 부모 중 1인이 청구 시 배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서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각각 제출하여야 하므로 2부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 법인 및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은 불요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이외의 은행은 이체 불가).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법령 목록

(2024. 8. 1.~2024. 8. 15.)

조약

조약제258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20805	2024. 08. 01	4
조약제25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0811	2024. 08. 09	4
조약제1059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중 정정	20813	2024. 08. 13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478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08	2024. 08. 06	4
대통령령제34787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8
대통령령제34788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4789호	전략사령부령	"	"	13
대통령령제34790호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479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479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479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479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479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4796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4797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479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479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480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3480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4802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480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4804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47
대통령령제34805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480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480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3480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4809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77
대통령령제34810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3481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34812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34813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4814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98
대통령령제3481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3
대통령령제34816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34817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9
대통령령제34818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481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13	2024. 08. 13	(별권) 2
대통령령제3482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48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4822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48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482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4826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3482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4828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4829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49
대통령령제3483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483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4832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483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348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48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4836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483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3483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483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48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6
대통령령제34841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20814	2024. 08. 14	(별권) 2

총리령

총리령제197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9	2024. 08. 07	4
총리령제197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총리령제197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총리령제197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총리령제1978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12	2024. 08. 12	3
총리령제197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13	2024. 08. 13	78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5	2024. 08. 01	9
-----------------	----------------------	-------	--------------	---

보건복지부령제10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보건복지부령제10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137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6	2024. 08. 02	4
보건복지부령제10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중 정정	"	"	15
보건복지부령제103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20
고용노동부령제42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08	2024. 08. 06	113
국토교통부령제137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4
농림축산식품부령제67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5
해양수산부령제69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7
행정안전부령제5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9
국토교통부령제137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09	2024. 08. 07	24
보건복지부령제104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산업통상자원부령제56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산업통상자원부령제57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29
산업통상자원부령제5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중소벤처기업부령제9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
행정안전부령제508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령	20813	2024. 08. 13	79
환경부령제1112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3
보건복지부령제10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14	2024. 08. 14	(별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1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	20814	2024. 08. 14	4
국가보훈부령제3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가보훈부령제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가보훈부령제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국가보훈부령제3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가보훈부령제3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가보훈부령제36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국가보훈부령제3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1376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	"	15
국토교통부령제1377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국토교통부령제1378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6
국토교통부령제138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국토교통부령제138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문화체육관광부령제562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해양수산부령제69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행정안전부령제51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행정안전부령제511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7
행정안전부령제51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법원행정처

SUPREME COURT OF KOREA

2024. 09. 01. VOL. 1695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